

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5.7.20.>

## 개인묘지 설치(변경)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			7일

  

개인묘지	소재지		지번	지목
	면적	합장여부	[ ] 예 [ ] 아니오	합장내용
	분묘형태	[ ] 봉분	[ ] 평분	[ ] 평장
	설치연월일	시설물 설치	[ ] 비석 [ ] 상석 [ ] 기타 석물 [ ] 없음	
	설치변경	설치변경연월일		
설치변경사유		[ ] 면적 [ ] 시설물 설치 [ ] 분묘 형태		
설치변경의 구체적내용				

  

사망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소	(전화 : )	사망연월일	

  

설치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소	(전화 : )	사망자와의관계	

  

관리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소	(전화 : )	사망자와의관계	

  

신고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소	(전화 : )	사망자와의관계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(변경) 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**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
------	-------

제 호	<b>개인묘지 설치(변경)신고증명서</b>			
소재지				
면적	설치(변경)연월일 . . .			
설치(변경)내용				
사망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-
신고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-	사망자와의 관계
	주소		전화번호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(변경)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**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**

관인

신고인 제출서류	1. 평면도 2.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(약도) 또는 사진 3.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(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(임야)대장 2. 토지등기부 등본 3.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. 지적도 및 임야도

**처리 절차**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